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119
------	------

2024. 9. 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 9.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이해우)

1. 제안이유

- ‘충무로 영상센터’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영상·전시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영상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 중으로,
-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시설형)

- 위치 : 중구 퇴계로 지하1층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
- 규모
 - 시설규모 : 전체면적 371m²
 - 보유장비 : DVD 5,157편, 서적 2,596편, 장비 80종 471개
 - 부대시설 : 아카이브실, 전시실, 상영관, 창작지원실 등

나. 위탁기간 : 1년 (2025.1.~2025.12.)

다. 소요예산 : 324백만원('24년 기준)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
- 영상·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서적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전시관 지원
- 영화인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 DB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3조 및 제12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 증가,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기대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3조, 제12조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2024.12.31) 예정인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충무로 영상센터의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영상산업의 저변을 확대·육성하고자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001.6.)하고 지하철 충무로 역사 내에 「충무로 영상센터 활력연구소」를 개관함(2002.11.).
- 이후 서울시와 한국독립영화협회 간에 운영비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충무로 영상센터 활력연구소」가 일시 폐관(2003.12.)되었으나, 「충무로 영상센터 오 재미동」(이하 “충무로센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 서울 영상위원회」²⁾가 수탁받아(2004.2.17.재개관) 지난 20년간 운영해 오고 있음.
- 현재 충무로 역사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충무로센터는 아카이브, 상영관, 전시실, 커뮤니티룸, 창작지원실, 장비실, 교육실로 조성되어 있으며, DVD 및 도서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서울에서의 영상물 제작을 위한 합리적 환경 개선 및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영상물 촬영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의 영상산업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당초 법률이나 조례 상의 근거 없이 운영되다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5.5.18.)으로 인해 지원 근거가 마련됨.

열람, 영화 관련 교육, 영화 장비 대여 및 제작지원, 소극장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 총무로 영상센터 시설 현황 >

- 위치 : 중구 퇴계로 지하 214 총무로역사 내 지하 1층
- 규모 : 약 371㎡
- 주요시설 : 아카이브, 오픈라운지, 장비보관실, 극장, 커뮤니티룸, 사무실 등
- 운영시간 : 월~토, 11:00~20:00(일요일 포함 공휴일 휴관)
- 주요기능 : 아카이브 및 열람, 교육, 장비·제작지원, 소극장, 오픈라운지 운영 등
- 장비 및 물품 : DVD(5,157편), 도서자료(2,596권), 물품(총 80종 471개)
- 공간현황

구 분	규 모	운 영 내 역
아 카 이 브	141㎡	DVD 및 영상자료 관람, 서적 열람, 센터안내 등
상 영 관	74㎡	영상자료 관람
전 시 실	46㎡	프로, 아마추어 작가 작품 소개 및 전시
커 뮤 니 티 룸	37㎡	유료대관 및 공간지원
창작지원실, 장비실, 교육실	73㎡	회의(세미나), 장비보관, 사무공간 등

- 한편 총무로센터는 종전의 위탁기간(2020.1.1.~2022.12.31.)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으나 민간위탁 재계약(2023.1.1.~2024.12.31.) 이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및 OTT 이용의 증가로 인한 서적 · DVD 및 상영시설 이용의 감소, 대여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이용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총무로 영상센터 이용 실적 >

(단위: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료열람실	서적	22,106	23,541	4,382	8,123	12,414
	DVD	4,679	4,640	833	1,200	1,382
교 육	509 (76회)	339 (39회)	405 (52회)	526 (52회)	441 (60회)	534 (67회)
영화 상영	913	1,008	1,406	1,322	826	1,008

	(63회, 99편)	(68회, 118편)	(극장 11회· 18편·157명/ 온라인 1회· 12편·1,249명)	(극장 11회· 30편·127명/ 온라인 1회· 12편·1,195명)	(52회·76편)	(52회·82편)
극장 대관 및 활용	1,699 (82회)	1,802 (82회)	559 (30회)	279 (47회)	1,095 (72회)	1,895 (106건)
장비 운용 (유료대여/촬영장비70% 할인지원)	1,695 (117건, 295일)	1,079 (99건, 22일)	790 (69건, 58일)	815 (70건, 163일)	1,885 (128건, 377일)	1,720 (132건, 344일)
영상편집실 운영	848	542	520	492	344 (커뮤니티룸 으로 통합)	559
창작지원실 운영	115(35회)	229(24회)	149(13회)	40(22회)		
전시실 운영	37,589 (10회)	31,011 (11회)	7,787 (6회)	22,721 (10회)	27,703 (10회)	33,372 (10회)
미디어 네트워크	124 (2단체)	280 (4단체)	142 (5단체)	40 (2단체)	69 (8단체)	3,358 (10단체)
합 계	70,277	64,471	16,973	35,558	46,159	59,401

3.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

- 충무로센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를 근거로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³⁾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충무로센터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센터 설치 당시에는 「문화영상진흥기본법」(1995년 제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년 제정)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년)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의 제정(2009.9.29.)으로 사업근거가 확립되었음.

- 그리고 동 동의안은 올해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충무로센터의 운영기간을 1년간(2025.1.1~2025.12.31.) 연장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의안 제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당초 서울시는 충무로센터를 2024년까지만 운영하고 2025년에 개관 예정인 ‘서울영화센터’로 이관할 것을 전제로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을 2년(2022.1.1~2024.12.31.)으로 정하였으나, 서울영화센터의 층별 공간용도가 변경되면서⁴⁾ 충무로센터의 이관이 사실상 무산되고 2026년부터는 충무로 센터가 수행하던 기능 중 일부만 ‘영상산업지원사업’⁵⁾과 통합될 예정임.
- 따라서 충무로센터의 폐지가 확실시된 현 상황에서 1년 간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장기·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인 민간위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4) 2023.8.23. 서울영화센터 건립사업 2차 변경계획(층별 공간용도 재구성)

5) 영상산업지원사업은 종전에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영화창작공간 운영’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통합하여 2023년에 신설된 민간위탁 사업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119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충무로 영상센터’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영상·전시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 영상관련 교육 및 장비제공,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 중으로,
- 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 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시설형)
- 위치 : 중구 퇴계로 지하199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
- 규모
- 시설규모 : 전체면적 $371 m^2$
 - 보유장비 : DVD 5,157편, 서적 2,596편, 장비 80종 471개
 - 부대시설 : 아카이브실, 전시실, 상영관, 창작지원실 등

나. 위탁기간 : 1년 (2025.1.~2025.12.)

다. 소요예산 : 324백만원('24년 기준)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
- 영상·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서적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전시관 지원
- 영화인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 DB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3조 및 제12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기대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3조, 제12조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조산업과 한재윤(☎2133-9227)